

## 청강메이커스랩 운영규정

제정 2020.03.23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55조에 따라 청강메이커스랩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청강메이커스랩은 문화산업 창의인재 중심 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메이커운동 활성화와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청강메이커스랩에는 청강메이커스페이스를 둘 수 있다.

② 메이커스랩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함)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간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
2.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
3. 메이커 기반 지역 커뮤니티 연계 네트워크 강화
4. 메이커 분야 창업 교육 및 지원 활성화

#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 청강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함)를 두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혹은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메이커 발굴에 관한 사항
2. 국내·외 대학, 지역사회, 기관과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3. 메이커 활성화 방안 연구 및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메이커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연구·심의에 관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메이커스랩 직원으로 한다.

⑥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재정) ①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, 사업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 세칙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# 제3장 청강메이커스페이스 시설이용 규정

제7조(시설관리 및 운영) ① 청강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의 이용은 무료로 하나, 공간 전체를 예약하거나 장비 사용에 대한 부가사항은 내부협약에 따른다.

② 개방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강메이커스페이스의 업무시간 내로 한다.

③ 사용자는 사용신청형식에 따라 신청 및 이용을 해야 한다.

④ 장비사용·임대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(고장, 파손)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배상을 해야 한다.

제8조(일반적 제한) ① 모든 장비는 기초장비교육을 이수한 사용책임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.

② 공간과 장비의 사용은 사용일지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시작할 수 있다.

③ 모든 사용자는 각 장비별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.

④ 공간과 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사용 전의 상태로 정리한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기초교육이수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⑥ 메이커스페이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
⑦ 메이커스페이스 내 음주, 흡연을 금지한다.

⑧ 건물, 장비, 시설의 구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⑨ 담당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간 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⑩ 컴퓨터 내 기존 설치파일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⑪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⑫ 기타 본 공간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
제9조(행위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출입을 제한한다.

1.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(단, 보호자 동행 시 허용함)

2. 반려동물(단, 안내견의 경우는 제외함)

3.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